

<p>表彰狀의 圖案을 변경 활용하고자 條例를 改正하려는 것입니다.</p> <p>改正內容은 條例에 規定된 表彰狀 書式을 市長이 필요에 따라 時宜適切하게 표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</p> <p>이상으로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訴請審查委員會費用辨償條例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表彰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.</p> <p>감사합니다.</p> <p>○委員長 朴禧柱 수고했습니다.</p> <p>다음은 專門委員, 나오셔서 提案說明된 案件에 대하여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專門委員 楊炳敦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訴請審查委員會費用辨償條例改正條例案 檢討報告를 올리겠습니다.</p> <p>.....</p> <p>(報 告)</p> <p>1. 委員會 回附</p> <p>가. 提案者 및 提案日字 : 서울特別市長('94.2.21)</p> <p>나. 回附日字 : '94.2.22.</p> <p>다. 上程日字 : 第69回 臨時會 第1次 内務委員會('94.3.24)</p> <p>2. 提案說明의 要旨</p> <p>가. 提案理由</p> <p>地方公務員法 改正(法律 第4613號, 1993.12.27)에 따라 서울特別市人事委員會 委員에 對한 實費辨償根據 마련을 為하여 現行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訴請審查委員會費用辨償條例를 改正하여 人事委員會 와 訴請審查委員會를 統合한 費用辨償에 關한 事項을 定하려는 것임.</p> <p>나. 主要骨子</p> <p>人事委員會 및 訴請審查委員會의 委員에게 實費辨償토록 함(案 第1條)</p> <p>다. 參考事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關係法令 : 地方公務員法 第7條 및 第14條</li> <li>○ 豫算措置 : 追更豫算 編成時 要求</li> <li>○ 合意 : 合意 必要 없음</li> <li>○ 其他事項 : 改正條例案 別添</li> </ul>	<p>3. 檢討意見</p> <p>가. 人事委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地方公務員法(以下 法이라 함) 第6條는 自治團體의 長은 任用權(任命, 免職, 休職, 懲戒를 行하는 權限)을 갖도록 規定하고 任用權者別로 5人 以上 7人 以下로 構成되는 人事委員會를 設置(法 7條)하여,</li> <li>1. 任用 및 升進試驗의 實施</li> <li>2. 升進, 轉補任用基準의 事前審議</li> <li>3. 升進任用의 事前審議</li> <li>4. 任用權者의 要求에 依한 公務員의 懲戒議決</li> <li>5. 其他 法令의 規定에 依하여 그 管掌에 屬하는 事項 等의 事務를 管掌토록 規定(法 8條)하고,</li> <li>○ 同法 第7條 第4項은 “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定하는 바에 따라 委員에게 實費補償을 할 수” 있도록 하였으나,</li> <li>○ 法律 第4613號(93.12.27) 地方公務員法 改正法律이 施行되기 前에는 人事委員은 人事行政에 關하여 學識과 經驗이 豐富한 公務員中에서 任命 또는 委嘱한 關係로(法 7條 3項) 人事委員에 對하여 法 第7條 第4項에서 實費補償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, 別途의 實費補償條例가 없었음.</li> <li>○ 그러나, 法律 第4613號 地方公務員法 改正法律의 施行에 따라 人事委員으로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뿐만 아니라,</li> <li>1. 法官 · 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</li> <li>2. 大學에서 法律學 · 行政學 또는 教育學을 擔當하는 副教授 以上的 職에 있거나, 國民學校, 中學校, 高等學校 校長의 職에 있는 者</li> <li>3. 公務員(國家公務員을 包含한다)으로서 20年이상 勤績하고 退職한 者를 人事委員으로 委嘱할 수 있도록 改正되어, 外部人士가 人事委員會에 參與</li> </ul>
--	---

<p>하게 되어 實費補償條例의 必要性이 擡頭됨.</p> <p>나. 訴請審查委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法 第13條은 公務員의 懲戒 其他 그 意思에 反하는 不利益處分에 對한 訴 請을 審查決定하기 為하여 任用權者別 로 地方公務員 訴請審查委員會를 두도 록 되어 있고,</li> <li>○ 法 第14條 第1項에 審查委員會는 委 員 7人으로 構成하며, 同條 第2項에 委員은,</li> </ul> <p>1. 法官·檢事 또는 辯護士의 職에 있 는 者</p> <p>2. 大學에서 法律學을 擔當하는 副教授 以上의 職에 있는 者</p> <p>3. 所屬局長級 以上의 公務員 中에서 市長이 任命 또는 委囑托록 되어 있으며,</p> <p>○ 委員에게는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 가 定하는 바에 따라 實費補償을 할 수 있도록 되어, 1966. 6. 8 條例 第 442號로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訴請審查 委員會費用辨償條例가 制定되어 施行中 에 있었음.</p> <p>다. 改正條例(案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改正條例案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人事委員에 對하여는 法 第7條 第4項에서, 訴請審查委員에 對하여는 法 第14條 第3項에서 實費補償을 할 수 있도록 되어, 이를 單一의 條例로 統合하고자 먼저 條例의 名稱부터 「서 울特別市地方公務員訴請審查委員會費用辨 償條例」에서 「서울特別市人事委員會및 訴 請審查委員會費用辨償條例」로 하고, 人 事委員과 訴請審查委員의 實費辨償 等 規定하고자 改正提案된 것임.</li> <li>○ 法 第7條 第4項과 法 第14條 第3項 은 實費補償을 條例가 定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規定하였으나, 改 正條例(案) 第1條는 「實費辨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</li> </ul>	<p>한다"하여 法上 用語와 差異가 있으 나, 一般的으로 补償은 損害의 填補時 財產上의 損失을 补充하기 為하여 交 付되는 金額의 意味로, 补償은 財產上 金錢上의 損失을 물어주는 意味로 會 計關係에 使用되나 條例 運用上에는 別差가 없는 것으로 思料되고,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法上 實費를 补償토록 되어 있으나 改正條例(案) 第2條는 日費로 規定하 였는 바, 생각컨대 日費는 日當의 뜻 으로 實費는 實際所要費用의 뜻으로 생각되나, 각 委員마다 委員會參席實費 를 計算하기도 어렵고 힘들어 日費로 規定한 것이 理解가 되며,</li> <li>○ 또한 日費의 基準이 없이 "豫算의 範 圍內에서 日費를 支給한다"로 되어 있 어 漠然한 点이 有지 않으나, 大部分의 委員會(자랑스런市民賞 功績審查委, 公職者倫理委員會)가 類似한 規定을 두 고 있는 点과 實際面에서 諸般物價水 準反映과 彈力性 있게 條例를 運用 하기 為하여 不可避한 것으로 思料됨.</li> <li>○ 參考로 訴請審查委員의 豫算上 日費는 '93年度에 1回 3萬원에서 '94年度에는 5萬원으로 計上되었음.</li> <li>○ 委員이 公務旅行時 第3條의 旅費基準 을 보면은 2級公務員에相當하는 旅 費를 支給토록 規定하였는 바, 委員의 身分이 法官, 檢事, 辯護士, 大學校 副教授職에 있는 者 等임을勘案할 때 安當하다고 思料됨.</li> </ul> <hr/> <p>다음으로 서울特別市表彰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.</p> <hr/> <p>(報 告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委員會 回附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提案者 및 提案日字 : 서울特別市長(94.3.11)</li> <li>나. 回附日字 : 94.3.12</li> <li>다. 上程日字 : 第69回 臨時會 第1次 內務委 員會(94.3.24)</li> </ol> </li> </ol>
--	---